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결정문

사건번호: KR-2000214

신청인: 인터내셔널 수주키 어쏘시에이션(대리인 : 특허법인 차)

피신청인: 장철웅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청인: 인터내셔널 수주키 어쏘시에이션

미국 텍사스 75026 플레이노 피.오.박스 260032

대리인 : 특허법인 차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56길 100

(양재동, 윤화빌딩) 6층

피신청인: 장철웅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신봉3길 17-9

아시아스즈키협회

분쟁 도메이트 이름은 "asiasuzukiassociation.org"이며, 피

신청인에 의해 주식회사 (주)아이네임즈(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
대로925번길 37 한승베네피아 2층)에 등록되어 있다.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20. 4. 27.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이하 ‘센터’라고 함)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
또는 말소를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20. 4. 29.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20. 4. 29.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20. 5. 6.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20. 5. 26.임을 통지하였다. 또한 같은 날
등기우편을 통하여 절차개시 통지 및 신청서 등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020. 5. 26.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020. 5. 27. 센터는 보충규칙에 따라 김종윤 위원을
행정패널로 선임요청 하였고, 2020. 5. 28. 행정패널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2020. 5. 28. 행정패널을
구성하였다.

3. 사실관계

신청인은 1983년에 미국 텍사스주 달拉斯에서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비영리목적의 협회이다. 신청인의 주요 업무는, 일본의 수주키(Shinichi Suzuki) 박사가 개발한 음악 교육법을 적용하여 아주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플루트 등의 악기 연주를 교육시키는 것이다.

수주키 박사가 개발한 음악 교육법은 아주 독자적인 것이어서 이 교육법은 개발자의 이름을 따서 "SUZUKI" 또는 "SUZUKI METHOD"으로 명명되고 있다. 신청인은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한국, 중국, 유럽지역 호주 등의 지역에 교육기관 및 협회를 설립하여 아주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SUZUKI METHOD"를 적용한 음악교육에 힘쓰고 있다.

신청인의 음악 교육법을 표창하는 명칭인 "SUZUKI" 또는 "SUZUKI METHOD"는 신청인의 상표이기도 하다. 신청인은 이 상표들의 법적 보호를 위해,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가 속하는 제9류, 제16류 및 제41류의 상품류에 대하여,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태국, 영국, 호주, 유럽(EP), 이스라엘, 멕시코, 러시아, 칠레 등에서 상표등록을 받아 두었다.

피신청인은 2017. 1. 29.자로 이 사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이 도메이니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 효자동 1가 603-4의 주소를 갖는 "아시아 스즈키 협회"의 명의로 그 웹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신청인은 이 협회의 대표이다. 피신청인은 그 웹사이트를 어린이들의 음악교육의 목적으로 이용하였다.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첨부자료 3)의 내용 중에는 피신청인의 협회가 수주키 박사가 개발한 "SUZUKI METHOD"에 관하여 마치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4.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도메인이름의 요부인 "suzuki" 또는 이를 포함하는 상표나 서비스표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신청인과 관계가 있다거나 신청인으로부터 이 상표에 관하여 라이선스를 허여 받은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상표 "SUZUKI"를 구성요소의 일부로 포함하는 것이어서, 서로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도메인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그 웹사이트에서 신청인의 음악교육 업무와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

여 영리를 취하고 있다. 신청인의 상표가 세계적으로 저명하고 특히 어린이 음악교육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분쟁도메인의 웹사이트를 신청인의 음악교육과 동일한 업무 수행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분쟁도메인은 신청인에게 이전되든지 또는 그 등록이 말소되어야 한다.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찰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의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

하면 다음과 같다.

A. 상표 · 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

이 사건 분쟁도메이름에서 확장자인 '.org'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로만 알파벳으로 기재된 'asiasuzukiassociation'인데, 이들이 비록 일련 불가분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구성부분 중 머리부분의 'asia'와 말미부분의 'association'은 일반인이 용이하게 그 뜻을 인식할 수 있는 단어이어서, 'asiasuzukiassociaiton'은 'asia', 'suzuki' 및 'association'으로 구분되어 인식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들 영어단어에 있어서, 'asia'는 '아시아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association'은 협회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들은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이 매우 미약한 단어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분쟁도메이름에 있어서, 식별력을 가진 요부(要部)는 'suzuki'라 하겠는바, 결국 이 사건 분쟁도메인은 전체로서 아시아 지역 수주기 협회로 인식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분쟁도메이름은 신청인의 상표인 'SUZUKI'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것이라 판단된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신청인이 제시한 주장 및 증거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도메인 이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신청인은 1983년에 설립된 교육기관 및 협회로서 어린이들에게 음악교육을 시키는 독특한 교육방법 및 교수방법을 개발하여, 이를 많은 국가들에서 설립된 협회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널리 적용해 오고 있으며, 신청인의 상표인 'SUZUKI' 및 'SUZUKI METHOD'는 신청인의 교육방법을 표창하는 상표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도메인 이름의 웹사이트에서, 신청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그가 마치 신청인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기만하여 수요자를 유인하고, 신청인이 제공하고 있는 음악 교육서비스와 거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제반 사정으로부터, 피신청인도 음악교육에 종사하는 자이고, 특히 신청인이 개발한 수주키 음악교육방법의 존재를 알고 있는 자임이 충분히 예측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는, 신청인의 'SUZUKI' 및 'SUZUKI METHOD'의 저명성에 기대어 수요자들을 유인하는 것이어서, 규정 제4조 (b) (i) 내지 (iv)에서 예

시하고 있는 도메인 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분쟁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정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행정판례는 '규정' 제4조 (a)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분쟁도메인 이름인 <asiasuzukiassociation.org>을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1인 행정판례

김종윤

결정일: 2020년 6월 11일